#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 보고서



## **休** 목

## I.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총괄표

Ⅱ.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	
1.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	1
2.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	1
3.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	2
4.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	2
Ⅲ.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	
1. 고교 교육과정 분석	3
2. 출제·검토위원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사전 연수 ······	3
3. 출제·검토위원 중 고교 교원 참여 비율 ······	3
4. 고교 교원의 출제, 검토 과정에서의 권한 강화를 위한 조치	3
5. 출제,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보완을 위한 개선노력	4
6. 기타	4
IV. 문항 분석 결과 요약	4
V. 대학 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	5
VI. 부 록	
	_
1. 창신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규정	6

2023학년도 대학별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 우리대학에서 실시한 대학별고사는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되었고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요인이 없었으며,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
#### I.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총괄표

			입학		=101				겨	열 및	및 교	과				
평가대상	입학전형	계열	모집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	문항 번호	하위 문항	인	문·사	회			과	학				교과 외
					<sup>그오</sup> 번호	국어	사회	도덕	수학	물리	화학	생명 과학	지구 과학	영어	기타	_,
면접 • 구술고사	창신인재 추천전형	전 계열	해당사항 없음 (고교 교육과정이 아닌 인성, 전공에 대한 관심도 등을 출제)					0								

#### Ⅱ.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

#### 1.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

구 분	판 단 기 준								
. –	항 목	세부내용	이행점검						
대학별고사 실시 관련 이행 사항 점검	1.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게재	① 기간 내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공개 (문항과 답안 공개의 충실성)	0						
	<ol> <li>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항목 준수</li> <li>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구성</li> </ol>	② 문항 총괄표 작성의 충실성	0						
		③ 문항 제출 양식(문항카드) 작성의 충실성	해당사항						
		④ 장별 내용 제시 여부	없음						
		⑤ 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 여부	0						
		⑥ 현직 고등학교 교사 포함 여부	0						

#### 2.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

가. 자체 규정 : 「창신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규정」 제정 및 시행

나. 제정 일자 : 2015년 3월 20일

다. 개정 일자 : 2020년 9월 1일 (제2차)

라. 상세 규정 : VI. 부록 참조

#### 3.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

가. 소관부서 : 입학홍보처

나. 위원회 명칭 :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

다. 위원회 구성

1) 내부위원(3명) : 입학홍보처장(위원장), 교무처장, 입학부처장

2) 외부위원(3명) : 현직 고등학교 교원(일반고)

라. 외부위원 구성 비율 : 50%

#### 4.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

#### 가. 선행학습 영향평가 방법·절차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

- 1) 공교육정상화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규정 제정
- 2) 제정일 : 2015년 3월 20일 (최종 개정일 : 2020년 9월 1일)

#### 나.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위한 조직 구성과 기능

- 1) 구 성 : 전체 6명 (내부위원 3명, 외부위원 3명)
- 2) 위원회 역할 : 아래 사항에 대하여 담당 및 심의
- -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-자체영향평가의 평가영역, 내용, 방법 및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
- -자체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
- -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
- -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
- -기타 자체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
#### 다. 자체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사전검토

1) 대상자 : 전체위원 (6명)

2) 검토기간 : 2023년 2월 20일(월) ~ 22일(수)

3) 검토방식 : 서면 전달, 위원별 검토

#### 라. 위원회 개최

1) 일시 : 2023년 3월 23일(목)

2) 개최방식 : 대면

- 관련자료 송부 : 2023년 3월 10일(금)

- 평가결과 및 의견 취합 : 2023년 3월 17일(금)

- 결과보고 : 2023년 3월 28일(화)

#### 마.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 결과 공개

1) 공개방법 : 입학안내 홈페이지 「공지사항」 탑재 (216번)

(공지사항 주소 : https://admission.cs.ac.kr/guide/guide1.php)

2) 보고서 형태 : PDF 파일 (전체 9페이지)

## Ⅲ.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〈출제 전〉

평가항목	세부내용	비고
1	■ 전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및 반영계획에 따라 대학별고사 실시 전 고교 교육과정과 관련성 없는 교과 외 평가기준(적성, 인성, 의사 소통능력, 표현력 등)을 계속 유지하고 지원학과의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중심으로 한 출제경향과 문항으로 평가하기로 결정, 이행	
고교 교육과정 분석	■ 고등학교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 : 고교 방문을 통한 의견수렴, 12회 실시 - 대상 : 창원지역 5개교, 김해지역 5개교, 양산지역 1개교, 부산지역 1개교 - 의견수렴 : 3학년 부장교사, 진로진학 담당교사	
<b>2</b> 출제·검토위원에	■ 관리위원회 구성 : 교직원 5명 (교원 3명, 직원 2명) - 역할(검토위원) : 출제문항에 대한 실제적인 검토, 개선방안 제시 - 사전교육 : 대입전형 및 대학별고사,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사항 교육 (일시 : 2022년 10월 4일, 17시 / 장소 : 입학홍보처)	
대한 고교 교육과정 사전 연수	■ 출제위원 선임 : 교직원 4명 (교원 3명, 직원 1명) - 역할 : 전 모집단위 공통출제를 위해 구성(모집단위별 출제오류 사전예방) - 사전교육 : 대입전형 및 대학별고사,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사항 교육 (일시 : 2022년 10월 11일, 16시 / 장소 : 입학홍보처)	

### <출제과정>

평가항목	세부내용	비고
<b>3</b> 출제·검토위원 중 고교 교원 참여 비율	■ 검토위원 중 고교 교원 참여비율 : 총 8명 중 3명, 비율 37.5% - 위원 구성 : 내부 5명, 외부 3명(일반고 교원)	
<b>4</b> 고교 교원의 출제,	<ul> <li>운영: 출제문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, 3회 실시 (부분검토 1회 포함) 난이도 조정 및 적합여부 사전 검토, 개선방안 제시 등</li> <li>방법: 서면검토</li> <li>절차: 검토실시 ▶수정요청 ▶대학 관리위원회에서 수정·보완 요청 및 이행여부 확인</li> </ul>	
교교 교건의 출제, 검토 과정에서의 권한 강화를 위한 조치	<ul> <li>대학 내 관련절차</li> <li>출제위원 관련회의 : 총 2회 실시</li> <li>관리위원회(검토위원) 관련회의 : 총 2회 실시</li> <li>수정 및 보완요청 : 총 5회</li> <li>(전형취지 위반 1건, 평가목적 불분명 3건, 난이도 조정 1건)</li> <li>대학별고사 관련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 회의 : 총 2회</li> <li>(1차 : 2022년 10월 7일, 10시 / 2차 : 2022년 10월 27일, 17시)</li> </ul>	
면접문항 출제 전 문항출제위원 대상 사전 교육 실시 (출제 당일)	<ul> <li>사전 교육: 입학홍보처장</li> <li>교육 내용</li> <li>전형취지를 고려하여 출제(전공에 대한 관심도, 적성, 인성 등)</li> <li>모든 평가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</li> <li>출제 방법: 최근 3년간 기출문제 확인 후 출제양식에 출제</li> </ul>	

## <출제 후>

평가항목	세부내용	비고
	▪ 출제 및 검토 과정에 대한 자체 평가 실시 여부 및 내용 - 출제 및 검토 관련 회의 실시 : 관리위원회 평가회의 실시 (수시모집 1회 : 2022년 11월 22일, 17시)	
<b>5</b> 출제, 검토과정에서	■ 전년도 출제 및 검토 과정에 대한 개선 실적  - 출제·검토과정 고교 교원 참여기회 보장: 2019학년도 3회 확대 후 계속 유지  - 모집단위별 출제에 따른 출제오류 등 사전예방: 공통 출제위원 선임  - 일반고 교원 참여비율 유지: 37.5% (4.2% 증가)  - 출제문항 및 관련자료: 전자문서 처리 (내부)	
발견된 문제점 보완을 위한 개선 노력	<ul> <li>대학별고사 관련 홈페이지 사전공지(수시모집): 1회</li> <li>관련사항 안내 및 출제문항 공개</li> <li>대학별고사 관련 수험생 안내: 3회</li> </ul>	
	■ 교사 자문단을 통한 대학별고사 관련 자문 실시 : 2회 (2022년 10, 12월) - 구성 : 외부 10명 (현직 일반고 교원 / 3학년 부장교사 포함) - 내용 : 대학별고사 운영에 관한 사항 (출제문항, 면접전형 등) ※전년대비 자문 1회, 현직 교원 3명 증가	
	■ 대학의 자체 규정 제정 여부 : 2015년 3월 20일 제정 운영 - 2015학년도부터 매년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, 결과 홈페이지 공지	
기타	■ 대학 자체 영향평가위원회 고교 교원의 참여 여부 - 위원회 총 6명 중 외부위원 3명 참여 (비율 : 50%) - 외부위원 : 현직 고등학교 교원 (일반고)	

## IV. 문항 분석 결과 요약

평가대상	입 학전 형	계열	문항 번호	하위 문항 번호	교과별 교육과정 과목명	교육과정 준수여부	문항 붙임 번호
면접· 구술고사	창신인재추천	전 계열			범위와 수준 내 출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요인 없음 (교과관련 없음)	준 수	-

#### V. 대학 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

- 1. 선행학습 요소를 배제하고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전형을 설계하고 운영
- 2. 대학별고사 실시 전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「평가문항 예시」등 관련 자료 작성 시 수험생에게 출제 경향 및 실제 출제문항 공개 등 더 많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반영
- 3. 면접고사 형태의 대학별고사 유지 (논술 및 적성고사 미실시 등) 전형취지와 수험생의 고사준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고려하여 향후 면접고사 폐지 또는 축소 등 검토
- 4. 출제자와 검토자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, 자체영향평가위원 운영과 고등학교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공교육정상화법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
- 5. 출제 및 검토위원 참여인원 및 관련 회의 지속적 확대, 운영 ▶유지
- 6. 2023학년도 대입전형 반영결과
- 1) 2022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 보고서 반영 계획에 따라 2023학년도 수시모집 4개 (간호학과 : 일반계고교, 특성화고교, 농어촌학생, 기회균형) 및 정시모집(간호학과 : 일반학생) 1개 전형에 대한 면접고사 폐지
  - ▶2020학년도 대비 면접고사 모집인원 비율

입시년도	2020학년도	2021학년도	2022학년도	2023학년도
모집인원	250명	243명	187명	85명
축소비율	_	2.8%	25.2%	66.0%
면접전형수	6개	6개	6개	1 개

- 2) 향후 면접고사 실시 전형 확대 자제. 모집인원 적정선 유지 계획
- 3) 공교육정상화법 준수를 위해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모든 전형의 취지에 맞는 문항을 출제하도록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, 노력
- 4) 자체평가와 별개로 외부 교사 자문단을 통한 관련 자문실시 (전원 현직 일반고 교원)
- 5) 모집단위별 개별 출제를 지양하고 전형취지에 맞게 공통출제를 통해 대학별고사 평가 관리 유지
- 6) 관리위원회(출제 및 검토 목적) 참여인원 및 관련회의 확대
- 참여인원 : 최소 5명(외부위원 별도) 유지
- 관련회의 : 단과 대학별 또는 전체 검토 등
- 7) 고교 교원의 출제·검토 과정에서의 권한 강화를 위한 조치
- 출제 또는 검토 과정에 고교 교원 참여기회 보장 (현재 3회 참여 유지)
- 외부위원의 개선 요구 시 위원회 검토 후 적극 반영
- 8) 현재 교과와 관련성 없는 평가기준(적성, 인성, 의사소통능력, 표현력 등)을 계속 유지하고 지원 학과의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중심으로 한 출제경향과 문항 계속 유지
- 9) 출제 문항의 난이도를 조절하여 이해도가 낮은 문항 출제는 지양

#### VI. 부록 : 창신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규정

- 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창신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) 자체영향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9.1.>
- **제 2 조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0.9.1.>
  - 1."선행학습"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, 시·도교육과정,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. <개정 2020.9.1.>
  - 2."영향평가"란 대학 입학전형에서 실시되는 고사(논술 등 필답고사, 면접· 구술고사, 실기·실험고사 및 교직적성·인성검사를 말한다)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0.9.1.>
- 제 3 조(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제2조에 따라 본 대학교의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안에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창신대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0.9.1.>
  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0.9.1.>
  - ③ 위원장은 입학홍보처장으로 하며, 위원은 교무처장, 입학부처장을 당연 직으로 하고 고교 교육전문가, 현직고교 교사, 학부모 등 외부인사 3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개정 2018.2.28.><개정 2020.9.1.>
- **제 4 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0, 9.1.>
  - 1.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  - 2. 자체영향평가의 평가영역, 내용, 방법 및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
  - 3. 자체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
  - 4.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
  - 5.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
  - 6. 기타 자체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제 5 조(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「창신대학교 교원의 보직임용 규정」으로 정한다. <개정 20 20.9.1.>
  - ② 본 대학교의 교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0.9.1.>
- **제 6 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<개정 2020.9.1.>
 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0.9.1.>

- 제 7 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, 위원장이 입학홍보처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. <개정 2020.9.1.>
- 제 8 조(분과위원회)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0.9.1.>
- 제 9 조(영향평가 시기) 영향평가는 해당 대학별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하며, 본 대학교 사정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모집시기(수시 및 정시)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20.9.1.>
  ② <삭제 2020.9.1.>
- **제 10 조(영향평가의 절차)** 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시행한다. <신설 2020.9.1.>
  - 1. 영향평가 계획 수립
  - 2. 영향평가 수행 및 자료 작성
  - 3. 위원회의 영향평가 자료 심의
  - 4.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사항 결정
  - 5. 영향평가 결과 관련기관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
- 제 11 조(영향평가 방법) ①영향평가는 교육부가 제작한 영향평가 매뉴얼에 따라 진행한다. <신설 2020.9.1.>
  - ② 매뉴얼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 <신설 2020.9.1.>
- 제 12 조(경비지원)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0.9.1.>
  - ② 자체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,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 13 조(영향평가 결과 및 반영계획 공개)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 전형 반영 계획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 개한다. <개정 2020.9.1.>
- **제 14 조(보고)** 위원장은 영향평가 결과를 서면으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9.1.>
- 제 15 조(운영지침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침으로 정한다. <개정 2020.9.1.>

부 칙 <제정 2015.3.20.>

이 규칙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18.2.28.>

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20.9.1.>

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